

**「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」
「고창 G-Food 가치사슬 연계 지역순환경제 프로젝트」
참여기업 지정공고**

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고창군이 지원하는 「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'고창 G-Food 가치사슬 연계 지역순환경제 프로젝트'와 관련하여, 신청·승인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9월 1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전북특별자치도지사, 고창군수,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, (재)전북테크노파크원장, (재)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

1. 사업개요

○ (사업목적)

- 고창 고구마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제품개발, 디자인·패키지 고도화, 판매·홍보 실증을 연계한 협업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구축
- 고창 지역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판매·체험 플랫폼과 연계한 시장성 검증 지원

○ (사업기간) 협약체결일 ~ 2026. 12. 31.

※ 기업별 세부 참여기간은 협약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2. 모집개요

- (지정대상)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362호 「협업형 지역생활경제 활성화 시범사업」의 선정과제인 '고창 G-Food 가치사슬 연계 지역순환경제 프로젝트'의 참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
- (공고방식) 승인 사업계획서 반영 기업 대상 지정공고
- (공고성격) 본 사업은 선정과제의 협업구조에 반영된 기업의 참여의사, 지원자격, 사업비 지급요건 및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함

○ (지정사유)

-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기반 협업사업으로, 사업계획서 수립 단계에서 고창 연고자원, 선행사업 성과, 생산·가공·유통 협업 가능성 및 공동브랜드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을 사전 구성하고, 기업별 역할과 지원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선정된 과제임
- 이에, 본 공고는 신규기업을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한 일반공모가 아닌, 선정된 사업계획의 협업구조에 반영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자격, 사업 참여의사 및 사업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정공고를 진행하고자함

3. 지정대상 및 신청자격

구분	지정대상	신청자격 및 수행요건
①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개발 (개발제품 제작 지원)	승인 사업계획서 내 제품개발 참여기업 4개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창군에 본사, 지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- 고창 고구마 등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·가공 식품 생산·판매가 가능한 기업 - 제품개발, 품평회, 디자인·패키지 개발, 축제 연계 판매·홍보 실증에 참여 가능한 기업 - 「산업디자인진흥법」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기업 - 공동브랜드·제품패키지 또는 축제브랜드 컨셉·전시구축 과업 수행이 가능한 디자인 전문기업 - 사업기간 내 주요 산출물 도출 및 관계기관·참여기업과 협업 가능한 기업 <p>*디자인기업 컨소시엄(지정기업 2개사) 필수*</p>
② 체험개발 및 축제조성	승인 사업계획서 내 앵커 플랫폼 참여기업 1개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창군에 본사, 지사,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- 고창 고구마 등 지역 농식품 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, 가공 식품 생산, 판매·유통 또는 관광·체험 연계가 가능한 기업 - 축제·마켓·체험공간과 연계한 판매·홍보 실증, 체험프로그램, 부스·홍보존, 관광패키지 기획 등이 가능한 기업 - 참여기업 개발제품의 현장 실증 및 소비자 반응 확인에 협조 가능한 기업

※ 기업명은 사업자등록증 및 승인 사업계획서 기준 최종 확인

※ 신청자격, 지정대상 등 수행요건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TIPA), 전북특별자치도, 고창군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4.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내용

지원 유형	프로그램명	지원 및 개발내용	지정 기업
사업화 활성 지원	①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개발 (개발제품 제작 지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창 특화자원 기반 개발제품 제작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품 생산 관련 원·부자재, 외주가공, 시제품 제작 등 품평회, 판매·홍보 실증을 위한 개발제품 제작 지원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 및 브랜드 적용체계 구축 제품별 패키지 구성, 표시정보, 홍보콘텐츠 및 축제 연계 판매·홍보 실증 준비(디자인 및 제작 별도) 축제 컨셉 개발 및 전시장 구축(캐릭터, 굿즈 등) 	4개사
	② 체험개발 및 축제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체험프로그램 기획, 체험존, 홍보포토존, 축제조성, 관광패키지 기획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판매부스 조성 등 	1개사

- ※ 기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이며,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
- ※ 지원항목 및 세부 지원범위는 협약체결 시 참여기업별 사업신청서, 견적서 및 예산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확정
- ※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견적금액은 최종 확정자료가 아니며, (재)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자인센터 및 (재)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사업목적, 제품개발 범위, 예산 적정성,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 시 조율할 수 있음

○ (지원규모)

- 기업수요, 제품개발 범위, 견적자료, 예산 적정성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와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

5. 접수기간 및 방법

- **(공고기간)** 2026. 9. 15.(화) ~ 9. 29.(화)
- **(접수기간)** 2026. 9. 15.(화) ~ 9. 29.(화), 18:00 까지
- **(접수방법)** 온라인 시스템(해당공고 선택) → 신청서류 제출(업로드)
- **(접 수 처)** <http://www.smtech.go.kr/region/rms>
 - SMTECH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, 이하 RMS
 - ※ 기관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
 - ※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‘[별첨] 기업지원업 관리시스템(신청기업용) 매뉴얼’ 참고
 - ※ 첨부파일명은 반드시 하기 예시와 같이 해당 양식을 준수하여 제출
ex) (기업명) (지원프로그램명)_고창 G-Food 프로젝트 참여기업 사업계획서
 - ※ 접수마감 당일에는 문의가 많아 담당자 연결 및 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미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제출서류)

구분	제출서류 목록(필수)	비고
①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개발 (개발제품 제작 지원)	① (양식)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③ 중복지원 금지 협약 및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(2023~2025) ※기간 내 '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시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. (추후, 2025년 재무제표 제출 요구 예정) ⑤ 신청 제출자료 1-1. 견적서(VAT 포함) 1-2. 비교 견적서(VAT 포함) 등 산출내역 증빙 자료 2. 사업자등록증 사본, (해당시)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.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) 4-1. 4-2.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 각 1부씩) 사본(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) ⑥ 제품 소개자료, 기존 제품 사진, 제품 사양서 등 보유제품에 대한 정보	참여 기업
	①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② 중복지원 금지 협약 및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③ 최근 3개년 재무제표(2023~2025) ※기간 내 '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시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. (추후, 2025년 재무제표 제출 요구 예정) ④ 신청 제출자료 1. (참여기업별) 견적서 2. 사업자등록증 사본, (해당시)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.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.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 각 1부씩) 사본(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) 5.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	디자인 기업
② 체험개발 및 촉제조성	① (양식)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③ 중복지원 금지 협약 및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④ 최근 3개년 재무제표(2023~2025) ※기간 내 '25년도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시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으로 제출. (추후, 2025년 재무제표 제출 요구 예정) ⑤ 신청 제출자료 1-1. 견적서(VAT 포함) 1-2. 비교 견적서(VAT 포함) 등 산출내역 증빙 자료 2. 사업자등록증 사본, (해당시)법인등기부등본 사본 3.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) 4-1. 4-2. 납세증명서(국세, 지방세 각 1부씩) 사본(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)	참여 기업

6. 지정기업 검토방법 및 지원확정

- (검토방법) 별도의 기업 간 경쟁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, 승인 사업 계획서에 반영된 지정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예정

- 1) 승인 사업계획서상 지정대상 기업 해당 여부
- 2) 사업 참여의사 및 사업수행 가능 여부
- 3)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
- 4) 지원내용, 건적금액, 제작수량 및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
- 5) 정부·지자체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
- 6) 공동브랜드·제품개발·디자인개발·축제 실증 등 협업사업 참여 가능 여부
- 7)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○ **(지원확정)** 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검토 후 적격기업을 지정기업으로 확정하며, 기업별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 확정·통보함

※ 본 절차는 신규 지원기업을 경쟁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, 선정과제의 승인 사업계획에 반영된 참여기업 및 디자인기업의 지원 적격성, 사업수행 요건 및 예산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임.

7. 적격성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기준

1) ①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개발/ ②체험개발 및 축제조성 참여기업

검토항목	검토내용	비고
사업 참여 적합성	고창 G-Food 프로젝트 목적 및 추진방향과의 부합성, 고창 지역 특화자원 활용 가능성	-
제품개발·실증 가능성	개발제품의 구체성 및 상품화 가능성, 사업기간 내 제품 제작·납품 및 축제 연계 실증 가능성	
디자인 수행역량	공동브랜드·패키지·부스·캐릭터 등 유사과업 수행경험, 제안 디자인 방향의 창의성·차별성·실현 가능성	
사업비 적정성	건적서 및 산출내역의 구체성, 제작수량·단가·지원금 신청액의 적정성	
성과 가능성	향후 매출, 판로확대, 지역경제 기여 가능성 및 성과자료 제출 가능성	

※ 사업 추진 특성상 검토항목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8.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지급

○ (사업수행)

- 최종 확정된 지정기업은 승인된 사업계획, 협약내용 및 전북 TP·(재)고창식품산업연구원과 협의된 세부 지원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원내용, 제작수량, 견적금액, 과업범위 등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북TP 및 (재)고창식품산업 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함

○ **(사업완료)**

- 지원기업은 사업완료 후 주관기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○ **(사업비 지급)**

- 사업비는 사업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되는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함. 단, 지급방식 및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 및 협약 기준에 따름
- 지원금액에 대응하는 기업 자부담은 없으나, 지원금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함
-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, 지원범위 외 비용,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초과비용은 은 기업에서 별도 부담함
- 사업수행 완료만으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, 사업수행 결과 및 집행 적정성 검토 후 최종 지원금액을 확정함
-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비용,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비용 및 기타 관계 규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9. 유의사항

- **(중복지원 불가)**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(주제)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중복지원을 한 경우, 선정평가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
-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, 지역특화산업육성(비R&D) 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

○ (지원제외 대상)

※ 사전 제외대상: 아래 사항에 **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**하시어 신청 바랍니다

- ① 부도업체 /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②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※ 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③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④ 최근 연도 결산(2025년도,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**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**
※ 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. (신용등급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)
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※ 최근 3년 부채비율 초과가 시설·설비 투자 등 유형자산 취득에 기인함을 입증하고, 평가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. 이때 자금의 출처 및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(계약서, 금융거래내역, 세금계산서 등)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최근 연도 결산(2025년도,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기준 **자본전액잠식**
※ 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.
-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(2024년도, 확정 재무제표에 한함)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- ⑦ 신청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인 기업
- ⑧ 동일한 신청과제(사업내용)으로 타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또는 과제의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⑨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동의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

○ (기타 유의사항)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선정여부 및 검토결과는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함
- 선정 이후 단순 포기 및 불성실 참여 시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- 부가가치세, 지원범위 외 비용, 사전 승인 없이 발생한 초과비용은 기업 부담을 원칙으로 함
- 참여기업은 제품개발, 품평회, 디자인 협의, 축제 연계 실증, 성과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
- 사업비 집행 및 결과자료 제출 시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사진자료, 성과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
제재부가금

- ◆ 허위청구 (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받은 지원금의 5배
- ◆ 과다청구 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◆ 목적외 사용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

10. 검토결과 확인요청

- 지정대상 기업은 적격성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결과에 사실관계 오류, 제출서류 누락 반영, 행정상 착오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음
- 확인요청은 기업 대표자 명의의 공문 또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확인요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
- 단, 사업비 결정, 지원규모 조정,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과업범위 조정 등 사업 운영상 판단사항은 확인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
11. 관련법규 ※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

- (요령)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
- (지침)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, 전북특별자치도, 고창군 및 전담·주관기관이 정하는 관련 기준

12. 문의처

○ 관련 문의

기관명	구분	전화번호	이메일
(재)전북 테크노파크	사업총괄, 디자인개발 출제 실증 연계	063-839-0209	jbtp_a0101@naver.com
(재)고창 식품산업연구원	제품개발 품질관리	063-560-5193	hongst@gfi.re.kr

○ 시스템 관련 문의처

구 분	담당기관	연락처
SMTECH 회원가입/기업등록, RMS 과제 신청 오류 등	중소기업 통합콜센터	1357 (국번없이)